[별지 제5호의3서식] <개정 2020. 10. 13.>

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 (등록 의무자)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 (휴대전화) ( )
	소속	직위	직급 등
	주소		

최종 재산등록(변동)사항 신고 기준일	
유예 신청 사유	[ ]재외공관 근무 [ ]해외주재사무소 근무 [ ]교육파견 [ ]휴직 [ ]교육파견 [ ]기타 ( )
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	발생일 . . . 종료일 . . .
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	[ ]정기변동 신고 /[ ]의무면제 신고
유예 신청 연도	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(회)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첨부서류	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사발령사항)

유의사항

○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업무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·제출	→	신고 유예 여부 결정	→	신고 유예 여부 통보
(등록의무자)		(헌법재판소사무처장)		(헌법재판소사무처장)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